



제 429국회 (정기회)
제 10차 정무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 등 수집 특례〉
■ 유동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17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입법 배경 및 필요성	3
2. 채무조정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11
3. 신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	18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0. 30.

다. 회 부 일 : 2025. 10.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고 발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신속하고도 형평성에 관한 우려가 없는 채무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러나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차주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 제공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도 사각지대가 없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입법 배경 및 필요성

□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을 설립하여 7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매입 채권에 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

○ 동 사업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¹⁾에 재정 투입분 4,000억원이 편성되어 지난 2025년 8월 설립된 새도약기금에 출연되었으며, 향후 금융권에서 약 4,400억원을 추가로 새도약기금에 출연할 예정임.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권의 전체 규모는 총 16.4조원, 채무자 수는 약 113만명으로 추산되며,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매입가율을 평균 5% 수준으로 추산한 총 매입 소요액은 8,000억원(= 16.4조원 × 5%)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원회는 일괄매입한 채권을 대상으로 즉시 추심을 중단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①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²⁾ 1년 이내에 해당 채권을 소각하고, ② 상환능력이

1) 2025. 7. 24. 본회의 의결

2) 개인 파산에 준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 등

현저히 부족한 경우³⁾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하에 새도약기금과 채무자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추진⁴⁾하며, ③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상환을 요구할 계획임.

【그림1 새도약기금 사업수행 절차】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정부의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자 채무소각·조정 프로그램은 장기·소액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소각, 채무조정, 상환요구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나,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등에서는 소득·재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상당 부분이 해당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은 소득, 재산(부동산 소유현황, 금융자산 및 가상자산 등), 출입국기록을 확

3)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

4)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지원 등

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⁵⁾이나, 이러한 정보들은 식별 가능한 채무자의 신용 관련 정보로서 「신용정보법」 상 개인신용정보⁶⁾에 해당함.

- 다만,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기 위하여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⁷⁾이므로,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일괄매입하여 채

-
- 5) 그 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는 심사 없이 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며, 거소과약 등을 위해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채권 소멸시효 연장 제외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1의2. 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2) 법령에 따라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
- 1의3. 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다음 각각의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 1)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이하 생략)
- 1의4. 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 1의5. 제1호라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가.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2. “**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임.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에 부실채권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⁹⁾가 있으나, 이를 이번 프로그램에서 소득·재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동의 없이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¹⁰⁾.

□ 이에 개정안은 「신용정보법」에 채무조정을 위한 개인 신용정보 제공의 특례를 신설하여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일괄매입하여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금융·소득·재산 관련 자료와 정보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8)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새도약기금(SPC)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소득·재산 심사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할 예정임.

-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6조제1항제1호가목·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업무에 딸린 업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바. 부실채권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 10) 금융위원회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한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상 근거만으로는 자료제공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기관들이 존재한다는 입장임.

○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활용할 경우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채무조정기구가 일괄매입한 채권의 소각 또는 채무조정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정보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경우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소액 연체로 장기간 고통받아온 채무자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과거 동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격의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의 경우, 채권 매입·소각 과정에서 채무자로부터 심사자료 수집 동의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그 결과 약 76만명(2.6조원)의 채권에 대한 매입·소각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신청은 5.6만명에 불과하고 매입·소각 실적은 9,462명(365억원)에 그쳤음.

【표1】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프로그램 운영 실적

구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운영기간	2018. 2월 ~ 2019. 2월
매입채권 유형	무담보
대상 채권 (연체기간 / 기준금액)	10년 ↑ (2017. 9월 기준) / 1,000만원
지원 내용	채무 소각
당초 추정된 지원 규모	76만명(2.6조원)
매입 실적	0.9만명(365억원)
지원구조	채무자 신청
참여기관	2,668개
재원	금융회사 출연 등 1,061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 이번 프로그램은 대상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¹¹⁾한 이후 일단 추심을 중단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채무조정 또는 상환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소득·재산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인정됨.
- 일괄 매입한 채권의 채무자가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으나, 관련 심사자료 수집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채권 소각이 늦어질 경우 해당 채무자에 대한 구제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채무자가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심사자료 수집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상환요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11) 과거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매입을 진행함.

□ 다만, 개정안의 입법취지, 동의없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자료·정보의 광범위성, 「신용정보법」 등 개인신용정보의 비밀을 보장하려는 개별 법률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장기·소액 연체채권에 대한 소각·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추진 과정에서 신속한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공정한 소각 및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취지이나, 이번 프로그램 이후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특례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에서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에는 ① 주민등록정보, ② 과세정보, ③ 각종 연금 관련 정보, ④ 금융자산 및 가상자산 관련 정보, ⑤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관련 정보 등 광범위한 자료·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정보들은 개별 법률에서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수집 및 활용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특성 상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광범위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향후 국회가 동 제도의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과거 「예금자보호법」에서 부실금융회사 임직원 등

에 대한 효율적인 부실책임조사를 위하여 ‘일괄금융거래조회권’¹²⁾을 도입할 당시 국민의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06년에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¹³⁾하였음.

- 이후 국회는 해당 부칙 개정 심사를 통해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의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해왔으며, 2019년에는 관련 개정안 심사를 거쳐 상시적인 유지 필요성을 인정한 후 유효기간을 삭제한 바 있음¹⁴⁾.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를 한정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은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13) 부칙에 해당 조문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한시 도입하였음.

14)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의 입법연혁>

개정일자	유효기간	비 고
2006. 3. 24.	2006. 3. 24. ~ 2009. 3. 23.	신설
2009. 2. 3.	~ 2011. 3. 23.	유효기간 연장
	(2011. 3. 24. ~ 2011. 5. 18.)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
2011. 5. 19.	2011. 5. 19. ~ 2014. 3. 23.	재신설
2014. 3. 18.	~ 2019. 3. 23.	유효기간 연장
	(2019. 3. 24. ~ 2019. 11. 25.)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
2019. 11. 26.	상시화	재신설

2. 채무조정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조정기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면제 및 이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자산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의2(채무조정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특례) ① 보유한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면제 및 이에 따른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다)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 <u>별정우체국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 · 보험 · 급여에 관한 자료</u> 4. 「<u>부동산등기법</u>」에 따른 등기부, 「<u>건축법</u>」에 따른 <u>건축물대장</u>, 「<u>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u> 5. <u>신용정보(제2조제1호나목의 정보에 한정한다)</u> 6. 「<u>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u>가상자산에 관한 자료</u> 7. 그 밖에 대상자의 <u>인적사항 · 소득 ·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u> ② 채무조정기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u>제공 요청을 위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u>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기구의 요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u>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u>」 제4조 2. 「<u>국세기본법</u>」 제81조의13 3. 「<u>지방세기본법</u>」 제86조 4. 「<u>개인정보 보호법</u>」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	--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조정기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민등록 관련 자료, 과세정보, 각종 연금 정보, 부동산 등 재산정보, 신용정보, 가

상자산에 관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먼저, 자료제공 요청 주체를 살펴보면, 개정안은 ‘보유한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면제 및 이에 따른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인 채무조정기구를 그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채무조정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별도 특수목적회사(SPC)인 ‘새도약기금’이 운영 주체임.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새도약기금을 채무조정기구로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고,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 계약¹⁵⁾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소득·재산 심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할 예정임.

○ 다음으로, 채무조정기구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이는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함) 상의 자료제공 요청 범위¹⁶⁾를 참고¹⁷⁾한 것으로 보임.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처리의 위탁)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16) 다만, 「서민금융법」 상 자료제공의 요청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1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가목·나목·라목 및 사목의 업무에 한정한다)·제4호 또는 제5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표2】 개정안에 따른 자료제공요청 대상 자료·정보

각 호	대상 자료·정보
1호	·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호	·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호	·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4호	·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5호	· 신용정보(신용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
6호	·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7호	·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소득·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 참고로, 금융위원이 제출한 소득·재산 심사와 관련하여 수집할 예정인 자료와, 개정안에 따른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음.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소득·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표3】 소득·재산 심사 시 필요 자료 및 개정안의 관련 근거

구분			담당 부처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32조의2
심사 자료	① 소득	소득	국세청	제1항 제2호·제3호*
	② 재산	부동산 소유현황 (토지, 건물) 주택임대차 신고 현황	국토교통부	제1항 제4호
			국토교통부	제1항 제7호
		자동차	국토교통부	제1항 제7호
		선박, 어선	해양수산부	제1항 제7호
		지방세 과세내역	행정안전부	제1항 제2호
		금융자산	금융기관	제1항 제5호
		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소	제1항 제6호
	③ 출입국기록		법무부	제1항 제7호
심사 생략 자료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부	제1항 제7호
	장애인연금수급자			제1항 제7호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국가보훈부	제1항 제3호·제7호
거소 파악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		법원행정처	제1항 제1호
	주민등록전산정보		행안부·지자체	제1항 제1호
시효 연장 제외	차상위계층		보건복지부	제1항 제7호
	한부모가족		성평등가족부	제1항 제7호

주: 안 제32조의2제1항제7호 근거에 해당하는 자료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개정안은 이러한 제공요청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률은 「금융실명법」 제4조¹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¹⁹⁾, 「지방세기본법」 제86조²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²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로, 이들 법률은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비밀의 제3자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각 개별법률에서 개인비밀에 관한 사항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경우, 개정안과 같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이에 따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²²⁾가 있음.

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19)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0)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22) 법제처 유권해석 2016. 11. 29.자 16-0477

(전략) 학자금상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요청과 달리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국세청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에 관한 자료를 요

□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상 채무조정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하여 제공요청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서민금융법」과 달리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자료제공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각 개별 법률에서의 제3자 제공 제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다만, 자료제공 요청 목적과 관련하여, 개정안²³⁾은 ‘채무조정기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채무조정기구가 수행하는 업무 중 보유한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면제 및 이에 따른 사후 관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제공 요청을 하지 않도록 자료제공 요청 대상 업무를 ‘채무조정, 면제 및 사후관리’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금융실명법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학자금상환법 제37조제1항에는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단순히 금융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인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한 금융실명법 제4조의 특례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이하 생략)

23) 안 제32조의2(채무조정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특례) ① 보유한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면제 및 이에 따른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다)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신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

□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사실 통지 의무를 면제하고, 채무조정기구가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한 사실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2조의2(채무조정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특례) ④ 채무조정기구는 제2항에 따라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한 사실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주체가 채무조정기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한 사실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회 방법을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⑤ 제3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u>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u>⑥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채무조정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u> <u>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채무조정기구의 신용정보 수집·제공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 각 개별 법률에서는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자가 해당 자료를 제공한 경우,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개인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음.

○ 대표적으로 「금융실명법」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²⁴⁾하여야 함.

□ 개정안은 이러한 개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기구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면제하고, 채무조정기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식별번호²⁵⁾를 제공한 사실 및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통지를 갈음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기구가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한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② 법 제2조제1호의2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실과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안 제32조의2제4항 본문), 단서에서 신용정보주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이러한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방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기구가 일괄적으로 매입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개인식별번호 제공 사실 및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사후적으로 채무조정기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다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중요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 향후 소득·재산 심사 이후 채권 소각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조정·상환요청 등을 위해 채무자에게 개별적인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비록 개정안의 목적이 채무자의 소득·재산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소각 및 채무조정함으로써 해당 채무자를 구제하려는 취지이나, 이와 같이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당사자

의 중요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해당할 수 있음.

- 이러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서는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규정²⁶⁾하고 있음.

○ 참고로, 채무조정기구가 소득·재산 심사를 마치고 채권에 대해 소각·채무조정 또는 상환요청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통지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의 예방·대비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재난 발생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
라.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피해자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재난 예방·대비·대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또는 당사자와의 개별적인 연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다만, 개정안의 목적,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는 개인식별번호가 제공되었거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을 통지하고, 구체적인 제공 사항은 채무조정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6